

시정질문의원집단폭행및작동토취장공사진상에관한조사계획안

의안번호	132
의 결	96. 6. 24
년 월 일	(제46회)

제출년월일 : 1996. 6. 24

제 출 자 : 시정질문의원집단폭행
및작동토취장공사진상
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

1. 목 적

- 폭행사건의 정확한 경위조사 및 의회 대책 강구
- 신속한 사태 수습으로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 및 의원상 재정립 도모
- 시정질문과 관련한 작동 토취장 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의혹 해소와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차질없는 이주단지 조성도모

2. 조사위원회 편성 및 운영

- 조사위원회 : 시정질문의원집단폭행및작동토취장공사진상조사특별위원회
- 위원수 : 22명(도시건설위원회 위원 10명, 각 위원회별 4명)
- 운영 : 필요 시 소위원회 구성 운영

3. 조사기간 : 1996년 6월 24일~1996년 8월 22일(60일간)

4. 조사실시 대상기관

- 공영개발사업소(관리과, 개발과)
- 도시계획국(도시과)
- 기획실(감사담당관실)
- 기타 조사와 관련되는 시 및 산하기관

5. 조사실시 대상사무

- 작동토취장복구공사
- 작동이주민단지조성공사

○ 공무원 감사, 조사 업무 등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무

6. 조사방법

-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
- 관련부서 현황보고 청취
- 현지확인
- 전문가 및 주민면담
- 조사결과 취합, 검토분석

7. 조요예산

- 현지 출장비 : 1,430,000원
- 산출내역

1인당 6,500원×10일×22명=1,430,000원